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26

발의연월일: 2020. 9. 16.

발 의 자:전봉민·강기윤·서정숙

정동만 • 이헌승 • 김미애

서병수 · 백종헌 · 최형두

이종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청렴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음. 그러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농축수산업계와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2년마다 검토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선물 등 가액 범위의 고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제8조제3항제 2호에 따라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 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선물 등 가액 범위의
	고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제8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수
	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
	례금 상한액을 2년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고시하여야
	<u>한다.</u>